



2001년에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의 최저가격낙찰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며,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시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업도 새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법인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등 세제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본지는 200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총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부]

■ 건설교통부

-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축소 : 종전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던 것이 1월 1일부터 건폐율 40% 이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80%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달라진다.(종전 건축법 78조 및 79조에서 규정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직접 규정)
- 지방 대도시 임대주택 건설확대 :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용지보상비 포함)의 50%까지 정율로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가구당 2,500만원~5,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부터 용지보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도 국민주

택기금에서 총사업비(용지보상비 포함)의 50%까지 정율로 지원 받게 된다.(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

• 비수도권지역 주택관련 조세·공과금 부담경감

- ① 양도소득세 : 종전에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액의 20~40%이었던 것이 금년 상반기부터 비수도권지역에서 금년말까지 85m² 이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 구입분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② 취득세·등록세 : 종전에 40m² 이하는 면제, 40m²~60m²는 50% 감면이던 것이 비수도권지역에서 금년말까지 60~85m² 규모의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된다.
- ③ 국민주택채권 : 종전에 주택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시 시가표준액의 0.2~0.7%를 매입하



던 것을 비수도권지역에서 금년말까지 85m²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50% 감면된다.

- 러브호텔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 건축허가 제한 : 종전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실벌점부과 의무화 : 종전에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발주청 등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 설계 등 용역업무 또는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 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감리 및 시공감리제도 도입 : 종전에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금년 7월부터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감리제도와 품질관리 · 시공감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와 건축감리를 행하는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된다.
-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변경 : 종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증에 가입했었는데 금년 7월부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여 부담하게 된다.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 금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로 하여 금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과 환경이 조화가 되도록 한다.
-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 : 종전에 한강변의 수변구역

에서 제외된 구역 또는 광릉수목원 주변 등에서 숙박 · 위락시설 및 음식점 등의 건축허가가 금년 7월 1일부터 동 구역 내에서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천 m² 이상의 건축물을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도록 변경된다.

- 조사검사대행 건축사의 처벌 강화 : 종전에 조사 · 검사 대행업무를 하위로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한 건축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적용 : 종전에 대지면적의 과반 이상인 용도지역의 건축기준 적용이 금년 7월 1일부터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등 기타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내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 건축사 시험제도 개편 : 종전에 예비시험 과목이 건축구조 · 건축시공 · 건축계획, 자격시험 과목이 건축법규 · 건축설계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사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예비시험 과목은 건축구조 · 건축시공 · 건축계획 · 건축법규로, 자격시험 과목은 배치계획 · 건축설계로 변경된다.
- 셔틀버스 운행제한 : 금년 7월부터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 병원, 호텔 등은 제외된다.
- 승용 · 승합 분류기준 : 금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 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월할 경우 금년 중 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 금년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천만원 · 최고 8천만원으로, 부상시 등급별로 60만 ~1천5백만원으로, 후유장애시 5백만원~8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 통행료 미납 과태료 : 금년 7월부터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 내(종전 2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정경제부

-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범위 조정 :** 종전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주택차입금 원리금의 40% 특별공제(공제한도 180만원)를 금년 1월 1일부터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100% 특별공제(공제한도 300만원)된다.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상속세 비과세 :** 종전에 문화재만 비과세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내 토지를 비과세 대상에 추가시켰다.
- **차입금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종전에 상장법인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협회등록법인이 추가되고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한 차입금 :** 지급이자 손불 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종전에 특례기한이 2000년 12월 31일이던 것이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외 :**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등이 금년 1월 1일부터 금융보험용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종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20% 감면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확대되고, 1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일반업종은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수도권은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가 감면된다. 현금수입업종인 도매·소매·의료업 등은 수도권의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은 10%가 감면된다.
- **경기활성화 지원제도 신설·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며,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 주택수요확대를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금년말까지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양도세 특례를 적용한다.

- **연구개발 세제지원 강화 :** 종전에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 한정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신설 :** 금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ERP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대기업 3%)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이 허용되고, 개인의 전자상거래 매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20% 감면이 신설된다.
- **감면시한 연장 :** 종전에 감면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 감면, 간접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자영농민에게 양도·증여하는 양도세·증여세 면제,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의 감면 시한 연장 :** 감면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였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금



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100이었던 감면율은 75%로 조정된다.

- **감면시한 연장** : 감면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업의 합병·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금융기관 등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국가정부계약제도** : 종전에 적격심사낙찰제였던 입찰제도가 1천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고 그 외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국내 입찰대상)를 도입한다.
-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 종전에 당사자간 상계 허용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외환거래규정에 의거 본 지사간의 순환적인 채권·채무 상계를 견별로 허용한다.(다자간 상계)
- **리콜권고제 도입** :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공포일-국회계류 중)
- **결함정보 보고의무** :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가 도입되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공포일-국회 계류 중)
- **우수제품제도 개선** : 조달청 고시인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에 의거 관보·인터넷 공고, 관련조합 등에 통보, 심사장에서 직접 의견진술 가능 등 사전의 견수렴을 강화한다. 행정평가를 폐지하고 행정평가를 구매담당과 및 구매국과장 회의 검토로 대체한다. 일반제품, S/W제품, 가구류 제품별 등 별도 평가서를 적용하는 등 제품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을 다양화한다. 기술평가(40), 품질평가(50), 행정 사항평가(10) 등 평가분야 배점을 조정하며, 유사·경쟁제품과의 비교평가 등 품질평가를 강화한다.

선정제품에 있어서 경고 등 별처분이 가능하고 선정제품의 기술·품질관리·A/S 등 사후조사를 통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자입찰 확대 시행(입찰방법 변경)** : 직접(현장)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방법(상시투찰 일정기간 내에 비치된 상시입찰함에 투찰하는 제도)만 인정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내 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인터넷에 연결된 PC로 입찰하는 제도)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설공사 1억원 미만, 물품구매 5천만원 미만에 대해 조달청은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 가능한 범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2억원 미만 물품구매 덤핑 입찰방지** : 종전 최저가낙찰제 실시에 따른 덤핑입찰 발생에 따라 납품실적, 재무상태 평가에 의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시 현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 보증금 납부를 강화하고, 품질검사 및 계약이행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보증기관 확대 지정** : 최저가낙찰제도의 시행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P-본드) 발급기관을 건설공제조합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주)도 가능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추후 이를 손해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 **입찰정보전산망 체계 변경** : 대한설비건설협회와 공유해 온 입찰정보전산망 체계를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통신망 체계와 병행해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이를 병용하지 않고 인터넷 통신망으로 완전 전환하게 된다.
- **원가계산프로그램 통합** : 현재 사용 중인 토목공사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은 5~7개로 상호 호환되지 않아 건설업계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모든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에 상호 호환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하게 된다.

새해특집 - 2001년에 달라지는 것들

•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 : 금년 4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함),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주식 취득(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함),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대한 출자(취득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함), 기업구조 조정·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 출자총액 제한의 사유 구체화

- 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동 업종 회사를 인수하여 2년 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목적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분할 법인에 대한 출자,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율 30% 미만의 출자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 ② 특정 외국인 측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로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 ③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30% 미만의 출자 등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를 위한 경우
- **부당 공동행위 감면규정 적용 확대** : 종전에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조치가 가능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는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정조치 등의 제한규정 완화** : 종전에 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년 4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

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 **과징금 환급 가산금제도 도입** : 과징금 환급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며, 금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 종전에 조사 거부·방해시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이 금년 4월 1일부터는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중요정보 고시적용대상업종 확대** : 현행 적용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회원권운영업, 사진현상 및 촬영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완구제조업 등 10개에서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식기·싱크대·정수기), 보석·귀금속업, 자동차부품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운영업, 유치원·보육시설운영업, 공동주택업 등 20개로 확대되었으며, 소비자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게 된다.
- **금융권 신용불량 정보관리 강화** : 은행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 **개인연금신탁제도 변경** : 소득공제 한도가 72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이자소득 및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55세 이후 연금 지급시 10% 세율로 과세된다.
- **증여성 송금한도 폐지** :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실시되면 증여성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연간 1만 달러 초과시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건당 5만 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새해특집 – 2001년에 달라지는 것들



- 일반 해외여행 경비 한도 폐지 : 한도가 폐지되지 만 1만 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 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해외 체재 및 유학경비 한도 폐지 : 건당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만 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이주비 한도도 폐지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 전화신고 도입 : 간이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전화(ARS) 신고가 허용된다.
- 신연금저축제도 시행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 2002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 2백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 받는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가 4천5백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 없이 추가 공제 받는다.
- 교육비공제범위 확대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이 공제된다.
- 의료비공제범위 확대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된다.
- 기부금 소득공제범위 확대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 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사립학교는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매년 보험금 4천만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 된다.
-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 : 금년 7월부터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 귀금속 등 특별소비세 부담 감소 : 보석, 귀금속, 사진기, 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라간다.
-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 :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확대 적용된다.
- 집중투표제 요건 강화 : 1%(상법상은 3%) 이상 자본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집중투표 청구권을 인정하고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시 3%(하향조정 가능)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불인정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근거 마련 : 장외전자거래시장을 도입해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 소수주주권 완화 : 회계장부 열람권(1%에서 0.1%로) 및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0.5%에서 0.05%로)의 행사를 위한 소수주주권을 완화한다.
- 인수·합병(M&A) 활성화 : 공개매수 개시시 신문광고를 한 후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M&A가 가능해진다. 공개매수 공고 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반복공개매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 공매도 주문제한 대한 실효성 강화 : 공매도시에는 기관투자자를 불문하고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도록 강제된다.
- 과징금 상향조정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 5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으로 올린다.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 연장 : 종전에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했던 것을 2004년 2월 4일까지 3

새해특집 - 2001년에 달라지는 것들



년간 연장한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 종전에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했다. 다만 자회사가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 이상 소유가 가능하던 것이 금년 4월 1일부터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정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30%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20%로 완화한다.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 : 종전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1년간 부채비율 제한 및 2년간 지분율 제한과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금년 4월 1일부터 현행 현물출자 방식 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과 지분율 제한, 자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 예외기간을 인정한다.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대상** : 종전에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년 4월 1일부터는 당해 상품을 가공하는 단계의 가격유지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 **최고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적 허용** : 종전에 모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년 4월 1일부터는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시정조치 등의 제한 규정 완화** : 종전에 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년 4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 **조사대상 자료범위의 명확화** : 금년 4월 1일부터는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 **국세과세 정보요구 근거규정 마련** : 금년 4월 1일부터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도 도입** : 과징금 환급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며, 4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산업자원부

- **전력산업구조 개편** : 한전 발전부문 분할 및 자회사를 설립한다. 전기사업자산 공정한 경쟁환경조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전력을 일반상품처럼 거래하기 위한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며, 전력분야 기술개발과 농어촌 전기보급 그리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지원을 위해 한전이 수행한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인수하여 수행한다.
- **양질의 전기공급으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종전에 500가구 이상의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만 한전 인수가 가능하고, 도서자가발전시설 결손운영비의 75%를 지원하였으나 50가구 이상 소도서까지로 인수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나은 전력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며, 결손운영 전액을 지원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한다.
- **한중 “공기업 민영화법” 적용배제** :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영권이 민간에게 이양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 법의 적용에 완전 배제한다.
- **중소기업기준 변경** :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및 자산총액을 기준하던 광업·제조업에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변경되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던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

새해특집 - 2001년에 달라지는 것들



근로자 수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 종전에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3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하던 것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금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의 경우에는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가능하게 된다.
-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금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ERP) 설비 및 POS설비에 대한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실시된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진** : 종전에 국방부 등 69개 기관에서 33조6천억원 구매 계획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방부 등 79개 기관 35조7천억원 구매 계획을 수립했다.
- **재래시장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 종전에 점포시설 개선자금이 5천만원, 시장시설 개선자금이 8억 원, 시장개발자금이 80억원이었던 것이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1억원, 시장시설 개선자금은 20억원, 시장재개발자금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기술이전개발지원사업** : 금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을 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제2차 개발비용(200개 업체 1억원 이내)을 지원한다.

■ 환경부

-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세분화 및 허용행위기준 합리화** : 금년 하반기부터 자연취락지구는 기존취락지구의 행위기준 적용,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밀접 정도와 지역 중 심역할 수행 여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세분하고 허용행위가 차등화 된다.
-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강화** : 종전에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만 되어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양오염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책임도 부담하며,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 등의 경우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수자에게도 책임의무가 부관된다.

- **대기환경기준 강화** : 종전에 아황산가스(ppm) 1시간 평균치 0.25, 24시간 평균치 0.14, 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0.15와 0.05로 각각 강화된다. 또 미세먼지($\mu\text{g}/\text{m}^3$)는 연평균치 0.03, 24시간 평균치 150이던 것이 0.02와 150으로, 납($\mu\text{g}/\text{m}^3$)은 연평균치 80, 1.5/3개월이던 것이 70과 0.5/년으로 강화된다.
- **한강수계지역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 종전에 80원/톤이던 것이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한강수계 공동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서울시·인천시 전역, 경기도 지역 26개시·군)는 110원/톤으로 조정된다.
-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개선** : 금년 1월 1일부터 배출부과금 부과시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도입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 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1종 사업장 1.8~1.4, 2종 사업장 1.3, 3종 사업장 1.2, 4종 사업장 1.1이다.

-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 감면 등** : 금년 1월 1일부터 기본부과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폐수 재이용에 대하여는 감경제도를 도입하여 폐수재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물자원 절약을 유도한다.
 -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 : 감면
 - ② 폐수 재이용사업자 : 감면
 - ③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부과금액의 10%~80% 감면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범위 확대** : 종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에만 토지를 매수하면 것을 금년 상반기부터 상수원 보



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에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 **지자체의 물수요관리정책 추진 의무화** : 금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에게 물수요관리 목표 수립 등 물절약정책추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치 못하는 경우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한다.
-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대상 확대** : 종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지원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구역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 **물다량사용 신축건물에 중수도 설치의무화** : 종전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이 가능하던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축연면적 6만m² 이상의 숙박업·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m³ 이상의 공장 등을 신축하는 자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명령** : 금년 하반기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지 아니한 시정·군수에게 환경부장관이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 종전에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본시설, 정비사업 실시 순위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던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이용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 실시** : 종전에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영향평가가 개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이 2 이상 영향평가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 **해안에서 광물 및 골재채취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

종전에 평가대상을 사업자 개인별 골재채취면적 25만m² 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100만m³ 이상인 경우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의 수에 관계없이 광업법상 단위 광구 안에서 골재 채취면적 25만m² 이상이나 골재 채취량 50만m³ 이상인 경우로 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부

- **산재보험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종전에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이 적용된다.
- **휴일급여 감액지급** : 금년 1월 1일부터 휴일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65세 이상)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받으며, 휴일급여 감액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의 65/100이다.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 금년 1월 1일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65세 이상)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받으며,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은 연금액의 93/100이다.
-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 금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수준 상향조정** : 종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2/3)으로 상향조정된다.
- **각종 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 확대** : 종전에 채용 전후 3개월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채용 전 3월·채용 후 6월호 확대된다.
- **급여기초임금 일액의 상한액 상한조정** : 종전에 1일 6만원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7만원으로 조



정된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 개선** : 종전에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던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가 금년 1월 1일부터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포함되고, 종전에 체당금 지급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던 것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우선 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 종전에 평균 훈련수당이 월 12만원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으로 상향조정되고, 7개 분야 66개 직종인 훈련직종은 9개 분야 81개 직종으로, 교통비는 월 3만원이던 것이 월 5만원으로, 기숙사 보조비는 일 5천원이던 것이 일 7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재직자 전용시설 개원** : 종전에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15개소이던 것이 영주직업전문학교, 원주직업전문학교, 부산 기능대학 등 3개소가 확충된다.
-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수 지원 대상 확대** : 종전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능보유자이던 기능인의 범위가 금년 1월 7일부터 생산·제조 및 서비스분야 등에서 기능보유자로 확대 대고, 지원대상이 기능보유자이던 것은 기능을 계승하는 자로 확대된다.
-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지정 신청기한 단축** : 종전에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이 훈련개시 14일전이던 것이 금년 1월 7일부터 사업주 자체훈련은 훈련 개시 7일전으로 단축된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 적용범위** : 종전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 수준** : 종전에 시간급 1,600원, 일금 12,800원, 월환산액 361,000이던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급 1,865원, 일금 14,920원, 월환산액 421,49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최저임금 적용범위** : 종전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던 것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으로 조정되었다.

- **필수공의사업 대상 제외** : 금년 1월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 등 7대 도시의 시내버스 회사와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의사업에서 제외된다.
- **실업급여수당 인상** : 금년 1월부터 1일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 변경** : 55세 이상 고령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3분의 1~4분의 1까지 6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했으나 구직 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

- **동사무소 기능전환(특별·광역시 및 일반시 1,655 개동)** : 종전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지도·관리기능이던 기능과 역할개념이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기능은 최소범위에서 수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복지·여가기능 향상 및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전환되면서 행정기능 평균이 655건이던 것이 200 건으로 455건이 감소된다. 따라서 시·구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공시지가조사 및 이의신청접수, 무단투기단속, 종량제 봉투판매, 쓰레기 수거, 통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유희광고물 조사, 소규모 건축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보안등·도로 파손 등 신고 접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방치차량 조사 등이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분실, 재발급 등),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인감, 과세증명 등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 전·



출입, 취학아동 관련, 우편·팩스민원, 출생·사망 신고,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농지 원부 등본 열람 교부,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업무 등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시설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필요시 관내 공공건물(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등)을 활용한다. 이에 따른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은 지역문화행사·취미동호회 활동·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 교실·노인교실 등 사회교육, 회의장·자원재활용·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내 집 앞 청소하기·불우이웃돕기·청소년 지도 등 사회진흥, 지역문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 등이다. 또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계 각종의 주민대표 15~25명으로 구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지방세 부가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 등록세 20%, 경주·마권세액 50%, 균등할 주민세 10%(인구 50만 이상 도시 25%), 재산세 20%, 종합토지세 20%, 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 40% 이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시키고, 등록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분은 세율 변동 없이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분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분은 50에서 60%로 세율이 인상된다.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 종전에 일반세율의 5배이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재해영향 평가제도 :** 종전에 6개 분야 16개 사업, 180만m²~30만m²이던 대상범위가 금년 7월 1일부터 6개 분야 16개 사업, 30만m²로 확대된다.

- 방재사전 심의제도 :** 재해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방재사전심의제도(15만m²~30만m²)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직자 윤리 :** 재산공개 대상자는 주식거래 내역서

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와 법인·단체에 2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 공무원 연금제도 :** 현행 법정 부담률이 7.5%에서 8.5%로 오른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50세부터 2년에 1년씩 60세까지 확대된다. 연금급여도 현행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바뀐다.

■ 정보통신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금년 7월 1일부터 주요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시설관리기관에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 통신구 공사 등 개방 :** 통신구 공사와 도로유관 관로공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 통신공사업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토목·토건업체가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윈도 차기버전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의 OS체제인 윈도의 새 버전 “휘슬러(코드명)”가 금년 6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업용(윈도 2000)과 개인용(윈도미)이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훨씬 편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MS측의 설명이다.
- 펜티엄4가 PC시장 주도 :** 지난해 출시된 펜티엄4 CUP가 금년 하반기부터 PC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300만원 가까이 하던 펜티엄4의 가격이 떨어지고 프로그램, 주변기기 등도 펜티엄4 환경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 한글 도메인 서비스 개시 :** 금년 3월부터 한글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한글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강화 :** 금년 7월부터 인터넷 업체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이버테러 처벌 강화 : 금년 7월부터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음란물 유통은 1년 이하 징역, 해킹은 5년 이하 징역, 바이러스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등 사이버 범죄의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e메일과 채팅 등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과 바이러스 유포 행위가 신설된 처벌대상이다.
-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 폭력과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발신자의 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시행된다.
- IS95C 개시 : 금년 상반기쯤 IMT-2000의 전 단계 서비스로 휴대폰을 통해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영화나 TV 등도 휴대폰 단말기로 즐길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TV방송 시작 : 금년 하반기부터 “꿈의 TV”라고 불리는 쌍방향 고화질의 디지털 TV 본 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전자책 단말기 출시 : 금년 3월부터 파일로 된 책을 PDK 크기의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전자책 단말기가 판매된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연금 지급일이 사유발생 다음달 말일에서 해당 월 말일로 변경된다. 현행 65세로 된 “계속 가입 상한연령”이 폐지돼 연금수혜 기회가 확대된다.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 무소득자”로 변경된다.
- 의약품 날알 판매금지 : 일반의약품의 날알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약국에서 “완포장(통약)”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 의료보험 혜택 확대 및 의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서병, 근육병 등 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금년 7월부터는 예방접종과 불소도포 등에 대해 의료보험에 적용된다.

- 의료보험료 인상 : 직장인들의 의료보험율이 총보수의 2.8%에서 3.4%로 조정되며, 보험료는 21.4% 인상되고,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15% 오른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 :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직장의보로 편입해 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인상 :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조정되며,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도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오른다.
- 묘지 단위면적 축소 : 금년 1월 13일부터 집단묘지의 분묘 1기당 9평 이내에서 3평(10m²)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9평(30m²) 이내로 제한된다.

■ 법무부

- 법인 등기부 전산화 : 상업등기부와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금년 2월부터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50톤 이상 대량 발부시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할 수 있다.
- 소규모 부동산 등기시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 생략 : 소규모 부동산(토지·건물 동시 양도시 5천만원 이하, 둘 중 하나만 양도시 2천만원 이하)을 취득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는 생략된다.
- 검찰신고번호 1301로 통일 : 마약·학교폭력·공직자 부정부패 등에 따라 달랐던 검찰청 범죄신고번호가 전국 어디서나 1301번으로 통일된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비용 하향조정 : 의뢰인이 부



답하는 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이 현행 수준보다 50% 이하로 낮춰진다.

- **마약류 보상금 상한액 인상 :** 마약범죄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공무원은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일반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소년원 출신을 위한 사회복지관(가칭) 신축 :** 가숙사 형태의 소년원 퇴원생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6개 월~1년간 사회적응방법을 지도한다.
- **교정업무 민간위탁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시행해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

■ 국방부

- **병역비리 관련자 의무부과 기간 연장 :** 병역비리 관련자에 대해 일반 기피자와 행방 불명자, 국외 이주자와 같이 35세까지 입영·소집의무를 부과한다.
- **징병제도 개선 :** 금년 2월 19일부터 전자신분 인식, 신체검사 결과 자동입력, 전자서명 후 자동판정 등의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한다.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이 높아졌을 경우 현역 병이나 보충역으로 복무가 가능해진다.
- **국외 이주자들의 국내 영리활동 제한 및 공직자 병역신고 :** 국외 이주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자가 국내에서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하면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또 병역사항 공개도 최종상황에서 징병검사와 판정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1급 상당 개방형 직위자도 병역사항 공개대상에 포함한다.
- **군인연금법 개정 :** 연금액 산정을 퇴직 당시 최종 보수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 월보수액으로, 임용전 복무기간 합산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 하사관 호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위관장교을 맡던 소대장 직위도 맡을 수 있게 된다.

- **장병 재해사망자 보상금 지급 :** 전투 또는 공무상 이유로 사망한 병사에게만 적용되던 보상금을 금년 4월부터 재해사망까지 확대하여 1인당 5백만원 씩 지급된다.
- **학자금 대부대상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 자녀 외에 본인의 학자금도 빌려주며 상환조건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된다.
- **군간부 전세금 대부제 실시 :** 군장교와 10년차 이상의 하사관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의 60~70%를 빌려준다.
- **군법무관 인력 총원 :**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격년제에서 매년 실시로 전환한다.

■ 서울특별시

-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 전국 최초로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의 발급장소를 확대하여 건축물 대장의 온라인 전산발급이 실시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 간소화 :** 종전에 매매교환의 경우 0.15~0.9%이고, 임대차 등은 0.15~0.8%로 거래금액 기준이 9단계로 복잡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법정중개수수료 거래가액을 매매교환의 경우 0.2~0.9%, 임대차 등은 0.2~0.8%로 3단계의 요율 체계로 축소·간소화된다. 또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과 고급주택은 거래특성상 자율화 조치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계약제가 도입된다.
-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제도 도입 :** 금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시설물유지, 단지환경정비, 입주민화합정도, 에너지절약추진 및 특수사업추진 등 투명한 관리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조정 :** 종전



에 건축물의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지 전체에 대하여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금년 1월 6일부터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 **전통한옥 보수비용 지원** : 종전에 전통한옥의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옥을 신축·개축하거나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게 된다.

• **공동주택 건축심의위원회 조정** :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동일한 심의 대상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건축위원회를 따로 운영함으로써 심의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가구수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퇴출기업 협력업체 안정자금은 500억원(서울소재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500여개), 우량벤처기업 안정자금은 500억원(신기술·기반기술보유 및 특허권을 받은 업체 우선지원), 담보가 부족한 퇴출기업 특례신용보증지원(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3,000여개)업체당 1억원 이내, 200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조기지원 1,700억원을 특별지원한다.

• **공공근로사업 조기 확대** : 1·4분기에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의 35%를 조기집행하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930억원)의 35%인 325억원을 3월말까

지 동절기 사업으로 조기 집행한다. 또 상반기에 금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60%인 558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 **동절기 단기특별취업대책** : 금년 1월 1일부터 실직자, 명퇴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후 취업을 알선해준다.

•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시행** : 금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원 Pool제를 도입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라 통합평가서 작성 후 개별분야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영향평가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신설한다. 평가대상은 주거시설(아파트) 50,000m², 판매시설(백화점) 4,500m²이다.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 금년 10월 1일부터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 중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실시된다.

• **내부 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 금년 9월부터 내부 순환로 40.1km 및 연결도로에 검지기, CCTV, 도로전광표지, 무인감시카메라, 교통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 **폐수 재이용 사업자에 대한 수질기본법배출 부과금의 감면** : 종전에 배출허용기준범위 안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수질기본부과금을 부과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산정방법에서 폐수 재이용 감면 부과율 및 사업장별 부과계수를 추가하여 산출한다.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재이용 10~20%는 10%, 20~30%는 20% 감면, 90%는 80% 감면 등 차등을 둔다.

• **수도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종전에 총 86개 수질검사항목에서 19개 항목이 추가검사 되며,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은 47개에서 6개 항목이, 자체검사항목은 39개에서 13개가 추가된다.